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가단4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2. 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2. 1. 6. 접수 제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오던 중, 2021. 11. 3. 23,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2021. 12. 28. 2,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2022. 1. 3. 46,400원을 결제하였고, 이후에도 2022. 2.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2차전10510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30,541,580원 및 그 중 29,895,8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4. 1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2. 6. 22. 확정되었다.

다. D는 2022. 1. 4.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8,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5,746,400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외에도 E 주식회사에 대한 30,401,000원의 채무, F 주식회사에 대한 7,600,000원의 채무, 주식회사 G에 대한 3,000,000원의 채무, H 주식회사에 대한 600,000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사단법인 K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오랜 친구인 D의 부탁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별지

1) 원고는 D가 전북 순창군 I 답 811㎡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21. 10. 14. J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21. 10.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